

제 2336호
2015. 01. 0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권 철 회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 제2015-1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 제2015-2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
- 공 고
 - 제2014-1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4
 - 제2014-22호 :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 1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가길 8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가길 8	2010.06.30.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1~5)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1. 0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2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가길 8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가길 8	2014. 12. 26.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1. 0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1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꿈을 키워나가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구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책임의 명확성 규정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안 제4조 ~ 제5조)
- 안전모니터링제 운영 및 어린이 안전교육(안 제6조 ~ 제7조)

☐ 사업의 보조 및 교류협력, 어린이 보호, 교통지도 등

- 사업의 보조 및 정보의 교류, 협력 등(안 제8조 ~ 제9조)
- 어린이보호 및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안 제10조 ~ 제11조)

☐ 어린이통학차량 기준 및 보호, 운전자 등의 의무

- 어린이통학차량의 기준 및 특별보호, 안전지대 확보(안 제12조 ~ 제14조)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여관동), 문의전화 : 3396-5412, FAX : 3396-8741, 메일 : young1025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성폭력·학대·악취·유인·유해식품·화재·교통·수난·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제2조제5호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 제 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제2조 제5호의 시설의 장은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시설물의 소방 등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 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제2조 제5호의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사업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교육지원청, 아동복지 시설, 경찰서,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3조 제1항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통학차량의 기준) ①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살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차량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어린이통학차량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차량이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앞지르지 못한다.

제14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① 구청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어린이통학차량을 탈 때에는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린이통학차량 등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22호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

근로여가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2015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5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5. 3. 2(월) ~ 6. 30(화) [4개월]
- 모집기간 : 2015. 1. 19(월) ~ 1. 26(월) [8일간]
- 모집인원 : 13명

번호	사업부서	사업내용	인원	근무시간	자격요건
	계		13		
1	교통행정과	방치자전거 수거 및 수리	4	일5시간 주5일근무	신체건강한 자
2	공원녹지과	공원환경 개선 및 정비	7	일5시간 주5일근무	신체건강한 자
3	환경과	에코마일리지 홍보 및 모집사업	2	일5시간 주5일근무	신체건강한 자

※ 희망사업 2순위까지 반드시 기재(미기재시 불이익 본인 책임)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
(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5세 미만자로 한정
- ③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같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⑦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⑨ 지역공동체일자리나 공공근로 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⑩ 기타 자차단체의 장이 자병, 건강취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지참)
- 가점대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지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업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 근무여건 :

- 근로시간 : 주26시간(주4일 5시간, 1일 6시간/주5일 근무 원칙)
※ 65세 이상 : 1일 3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주15시간)
- 임금 : 시간당 5,580원(간식비 3,000원 별도)
- 4대보험 의무가입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합격자 발표 : 2015. 2. 25 (수)

○ 공고내용 문의처 : 취업지원과 ☎ 3396-5383, 주소지 동주민센터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5. 1. 7.

중구청장